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령 관련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지게차 조종 자격 및 방호조치 관련 자료

## ① 건설기계관리법 적용 지게차\* 조종 자격(시행일 : 기 시행 중)

\*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와 조종석을 가진 것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3톤 이상) 또는 소형건설기계조종사 면허(3톤 미만) 소지자만 조종 가능**

구분	3톤 이상 지게차	3톤 미만 지게차
자격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소형건설기계조종사 면허
면허 취득 절차	① 지게차운전기능사 취득 [한국산업인력공단] ↓	① 제1종 대형 또는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 면허를 가진 자가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12시간) 이수 ↓
	② 적성검사[지자체]	
	③ 조종사 면허 발급[지자체]	② 조종사 면허 발급[지자체]

## ② 건설기계관리법 미적용 지게차\*\* 조종 자격(시행일 : '21. 1. 16부터)

\*\* 3가지 조건<① 전동식 ② 솔리드 타이어 부착 ③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을 모두 만족하는 지게차

[참고] "도로를 운행하는 솔리드 타이어 부착 전동식 지게차" 는 건설기계로 등록하고 번호판을 부착하여야 함(시행일 : 2014. 7. 29부터)

👉 **자격 소지자 또는 교육 이수자만 조종 가능**

- (자격) 지게차운전기능사
- (교육)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 과정(12hr)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소지자는 ① 3톤 이상 지게차 ② 3톤 미만 지게차 ③ 건설기계 관리법 미적용 지게차를 모두 조종 가능

조종 자격 필요 지게차				조종 자격 불필요 지게차			
							
좌식 지게차	입식 지게차	보행식 지게차	전동 이동식 스택카	수동 이동식 산토카	수동 이동식 스택카	전동 이동식 팔레트 대차	수동 이동식 팔레트 대차

### ③ 경기북부지역 소재 소형 건설기계 조종 교육기관 현황

연번	교육기관명	소재지역	전화번호
1	대한중장비운전학원	양 주	031-836-7478
2	쌍둥중장비운전정비학원	양 주	031-858-8272
3	대성중장비학원	남양주	031-566-7845
4	북부신진중장비학원	남양주	031-529-3131
5	(재)한국전기직업전문학교	포 천	031-531-2727
6	연안중장비운전학원	고 양	031-969-6933
7	대한상공회의소 경기인력개발원	파 주	031-943-4966
8	현대중장비운전학원	파 주	031-952-1215

※ 교육기관 전체 리스트는 대한건설기계협회([www.kcea.or.kr](http://www.kcea.or.kr)) 홈페이지 → 통계자료실 → 건설기계 교육기관에서 검색, 조회 가능

### ④ 사업주가 하여야 할 지게차\*\*\* 방호조치

\*\*\* 법 적용 대상 : 모든 지게차 (건설기계관리법 적용 여부와는 관계 없음)

- (기존) 헤드가드, 백레스트(backrest),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 (2021. 1. 16부터 추가) ① 후진경보기와 경광등 설치 또는 ② 후방감지기 설치 등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

#### 후진경보기 및 경광등(예시)



경보기(음향)



경보기(광선)



경광등

#### 후방감지기(예시)



후방감지카메라(모니터포함)



후방감지센서



모션감지센서

#### 관 련 조 항

- 법 제80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① 누구든지 동력(動力)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
- 시행규칙 제98조(방호조치) ①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영 제70조 및 영 별표 20의 기계·기구에 설치해야 할 방호장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지게차: 헤드가드, 백레스트(backrest),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9조(전조등 등의 설치) ① 사업주는 전조등과 후미등을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명이 확보되어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사업주는 지게차 작업 중 근로자와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게차에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하거나 후방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9. 12. 26. 시행 2021. 1. 16]